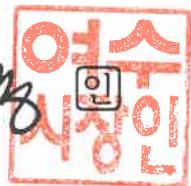


2024년 제10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 월 6 일

여수시장 2024.12.6.



여수시 규칙 제847호

붙임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규칙 제847호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2항 제3호 “토지사용승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토지사용승인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특수 가압시설의 허가기준)</p> <p>① (생 략)</p> <p>② 특수가압시설의 설치허가 신청은 그 지역주민의 대표자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특수가압시설 허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p> <p>1. 특수 가압시설의 운영계획서</p> <p>2. 설계도 설계서 및 지적도 기부 채납 및 등기부등본</p> <p>3. 토지사용 승인서 및 인감증명서</p> <p>4. 소요자금 조달 내역서</p> <p>5. 대표자 증명서</p> <p>③ (생 략)</p>	<p>제5조(특수 가압시설의 허가기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토지사용 승인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p> <p>4. (현행과 같음)</p> <p>5.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